경제 규제혁신 TF 22-2-1 (공개)

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

2022. 9. 5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 경과1
Ⅱ. 주요 특징2
Ⅲ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──── 3
Ⅳ. 향후 계획15
〈참고 1〉 과제별 추진 계획16
〈참고 2〉 과제별 부처 담당자19

Ⅰ. 추진 경과

- ◇ 지난 7.28일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 집중 논의를 통해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 발굴
- ① 정부출범 이후 기업, 경제단체, 협회* 등으로부터 규제혁신 과제 발굴
 - → **430개** 검토대상 과제 리스트업(9.5일 기준)
 - * 대한상의, 전경련, 중기중앙회, 무역협회, 인터넷기업협회 등
- ② 이 중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 50개를 7.28일 경제 규제 혁신 TF에서 발표하고, 개선 이행 중
- ③ (작업반 발굴) 잔여 380개 과제 중 작업반 논의*·민간위원 검토를 거쳐 신산업 분야 등 27개 과제** 개선 결정
 - * 작업반 회의: 총괄반(8.31) 현장애로해소반(8.26), 입지규제반(8.18, 8.26), 환경규제반(8.30), 신산업규제반 內 디지털산업반 (8.17) 등
 - ** (예) 전기차 충전소에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·판매 허용
- ④ (민간위원 발굴) 부처 개선곤란 과제 중 민간위원이 개선이 필요 하다고 검토한 과제는 민간위원이 부처 책임관(규제 담당 부처 차관·국장)과 토론·협의를 거쳐 9개 과제*를 추가 개선하기로 결정
 - * (예)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.5톤 → 2.5톤까지 확대
 - ⇒ 금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총 36개 개선과제 발표

Ⅱ. 주요 특징

- ◇ 1.8조원 투자에 대한 차질없는 뒷받침, 경제단체·협회 등이 건의한 과제를 민간위원이 주도적으로 점검·발굴하여 성과 창출
-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(0.4조원) + 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(0.4조원)
 + 순환경제 활성화(1.0조원) → 민간 투자 1.8조원+ α 뒷받침
- **공장부지 확보 관련 불확실성** 등으로 공장 신·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^{*} 해소** 노력
 - * (A기업) 당초 지자체 계획에 미반영된 기업의 공장 신·증축 허용량 확보 지원 → 4천억원 투자 예정(23년, 잠정)
-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
 - * (B기업) 전국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 → 4천억원 투자 예정(1단계, '23년)
-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* 마련(※별도 안건)
 - * ('25년까지 투자 예상규모, 추정) 플라스틱 열분해 6.5~7.5천억원,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2.3천억원
- ② 개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 → 1차 50개 과제발표 후 단기간 內 36개 과제 발굴
 - 당초 부처가 **개선곤란** 하거나 **신중검토**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짧은 시간(1개월) 내 36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
 - 규제혁신은 정부 내내 고강도로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경로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접수·검토 중이며,
 - 협회·단체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**전수조사**도 추진 중

③ 부처의 책임성과 민간 주도 규제개혁 성과 창출

- 작업반 회의 등을 통해 과제발굴부터 개선여부 결정까지 규제개선 프로세스 전 과정에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
- 특히, 규제 담당 부처 **차관·국장을 책임관**으로 지정하여 쟁점과제에 대해 민간위원과 토론·협의한 결과 **9개 과제는 추가개선 결정**

Ⅲ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

- ◇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사항을 중심으로 36개의 신규과제 발굴
 - (현장애로: 8개) 운송·물류,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, 부담 완화 등을 지원
 - (신산업: 19개) 수소·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,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 등
 - (기타: 9개) 환경검사 합리화,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, 개발절차 간소화 등 환경, 보건·의료, 입지 분야 규제 완화
- ① (현장애로)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규제 개선

[운송·물류]

-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.5톤 → 2.5톤까지 확대*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^①택배사업자 직영 조건 또는 ^②택배사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6년 이상 택배 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(대폐차)하는 경우
 - ▶ (규제현황) 택배 물동량은 증가추세이나 택배용 화물차는 1.5톤 미만만 허가-증차가 가능하여 배송효율 저하, 대형상품 배송에 어려움
 - ▶ (개선목표)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추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확대
 - ▶ (기대효과) 가구, 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 제고 및 배송효율 저하 등 택배업계 현장애로 해소
- ②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(小)화물 규격 확대*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(예) 우체국 택배 등을 감안 부피 4만m³→6만m³, 총중량 20kg→30kg
 - ▶ (규제현황) 시외버스는 부피가 4만때 '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kg 미만인 소화물에 한해 운송을 허용 중
 - ▶ (개선목표)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소화물 운송을 물품적재장치(적재함) 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운송 가능
 - ▶ (기대효과) 신속한 운송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수단 제공
 - ※ (파급분야) 시외버스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물량 확산 및 운송수입 증대

[건설]

- ③ 3층 이상 가설건축물(컨테이너 등) 축조시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 생략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▶ (규제현황) 3층 이상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축조 시 신고하되,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도록 규정
 - ▶ (개선목표)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
 - ※ (파급분야) 컨테이너 外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로 확대 가능
- 4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*
 - *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진 예정
 - ▶ (규제현황)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, 경영상태, 기술능력, 신인도 등을 감안하나, 실질적 시공능력 반영에 한계
 - ▶ (개선목표)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 구축
 - (기대효과)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의 공정성·신뢰성 향상→건설투자 효율적 배분
- **⑤**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**공사이행기간을 단축**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* 삭제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(시공 단계)⑩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·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.
 - ▶ (규제현황) 공사량의 증감없이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경우 감액정산 여부에 대한 국가계약법령(감액정산하지 않음)과 총사업비 관리지침(감액정산 의무화) 간 규정이 달라 해석에 혼선
 - ▶ (개선목표)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관련 비용 반영 및 정산 관련 사항을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일원화
 - ▶ (기대효과) 법령간 불일치를 해소하고,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- ⑥ 지자체의 공장총량제*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공장 신·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(※현장대기 프로젝트)
 - *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
 - ▶ (규제현황) 당초 지자체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, 이후 공장 신증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장 신·증축 허용량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
 - ▶ (개선목표) 공장총량제 미집행물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공장 신·증축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공장 신·증축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의 차질없는 집행

[안전·공공]

- ↑ 산업 현장에서 회전기계(예: 컨베이어) 안전덮개 사용시 기업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▶ (규제현황) 안전덮개의 제작/설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 발생
 - ▶ (개선목표) 회전체 안전덮개 안전조치 이행여부 판단 기준 마련
 - ▶ (기대효과)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업체의 불확실성 해소
 - ※ (파급분야) 유사한 동작을 하는 다른 산업현장 기계 안전조치로 확산 가능
- 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의 겸직제한 완화*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운영 시스템 특성상 겸직제한 의무 적용 필요성이 낮은 기업 등을 대상
 - ▶ (규제현황) 정보통신망법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이사를 지정·신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정보보호 외 다른 업무 겸직 불가
 - ▶ (개선목표)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 부담 경감
 - ▶ (기대효과) 기업의 이사급 전담 CISO 지정 부담 완화 등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
 - **※ (파급분야)**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합리화

② (신산업) 전기·수소차 등 미래차, 신기술 선박·드론 등 산업 발전 지원

[전기·수소차 등 미래차]

- ① 개인(비개방형)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
 - *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임시허가 진행 중('22.1월~'23.12월)
 - ▶ (규제현황)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
 →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여
 수익을 창출하는 비개방형(개인사용) 충전기 공유사업 불가
 - ▶ (개선목표) 개인(비개방형) 충전기 공유를 통해 생활 거점형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유경제를 통해 한정된 재화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
 - ▶ (기대효과)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사용자 편의 증진
 - ※ (파급분야) 여타 개인소유기기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확대 가능
- ②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*
 - * 추후 기술적 상황,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형식승인 기준 마련 가능
 - ▶ (규제현황) 전기차 충전기는 유선·무선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지만, 무선충전기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제품 인증 및 출시 불가
 - ▶ (개선목표) 무선충전기 제품 출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선
 - ▶ (기대효과) 무선충전기 도입 및 무선충전 사업 활성화
 - ※ (파급분야)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, 전기충전 사업 활성화
- ❸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*
 - *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
 - ▶ (규제현황) 주유소는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*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충전기 설치 불가능 주유소 다수
 - * ^①주유설비 및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 불가 ^②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엄격(예: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이격)
 - ▶ (개선목표)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
 - ▶ (기대효과)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이용 국민 편의 제고
 - ※ (파급분야) 주유소 업계의 전기차 충전설비 부가이익 창출, 전기차 및 충전설비 관련 산업 활성화

- 4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·판매 허용
 - ► (규제현황) 전력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
 - ▶ (개선목표)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연계한 전기차충전소 운영을 전력시장 외 거래 유형으로 인정
 - ▶ (기대효과)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시 발생하는 전력손실 및 사회적 비용 절감
 - ※ (파급분야) 전기차충전소의 사업 모델 다각화로 전기차충전소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
- **⑤**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·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여 주유소에서 전기 생산 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
 - ▶ (규제현황) 주유소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 미포함
 - ▶ (개선목표) 주유소의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기준 개선
 - ▶ (기대효과) 주유소 내 친환경 발전설비 보급,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
 - ※ (파급분야) 주유소 업계의 부가이익 창출 및 친환경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산업 활성화
- ⑥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
 - * 울산규제자유특구에서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해 수소충전 실증 중('19.12월~'23.12월)
 - ▶ (규제현황) 고정식·이동식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되어 실내물류운반기계(지게차, 무인운반차 등)는 수소충전 불가
 - ▶ (개선목표)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 확대
 - ▶ (기대효과) 전기로 운영되던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여 기존에 비해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생산성 증가
 - **※ (파급분야)** 건설기계, 트램, 열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분야로 파급

- **?**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* 유용자**의 범위에 계량기 제조업체 추가
 - * 수소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계량·평가하는데 활용하는 장치
 - ** 수소유통전담기관(가스공사), 수소안전전담기관(가스안전공사), 계량기 형식승인· 검정기관,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(표준과학연구원), 자동차 제작사만 해당
 - ▶ (규제현황) 수소차 이외에는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으나, 규제특례를 통해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는 예외적으로 충전 허용
 - ▶ (개선목표) 계량기 제조업체도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을 위해 충전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계량기 제조업체의 기업활동 지원
 - ※ (파급분야) 수소차 충전기 신뢰도 향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

❸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*

- * 운전자, 충전사업자 등 의견수렴 및 실증(현재 인천공항T2 등 3개 규제샌드박스 승인완료)을 통해 안전성 검증 후 추진
- ▶ (규제현황) 국내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소차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불편 초래
- ▶ (개선목표) 안전하고 편리한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
- ▶ (기대효과)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및 수소차 이용자 충전편의 제고
-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(법령상 의무)시 회수-액화 통합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*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주유소 내 회수-액화 시설도 기존 회수시설 요건 충족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
 - ▶ (규제현황) ①주유소 발생 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시설 의무화
 → 회수된 유증기는 정유사 등으로 가져가 액화 후 재활용
 ②신기술로 회수-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발하였으나,
 현재 회수-액화 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애로
 - ▶ (개선목표) 회수-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기술 융합설비의 주유소 내 설치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재활용에 기여
- ①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(LNG)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
 - ▶ (규제현황) 자동차용 LNG·CNG 내압용기는 차체의 외측면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는데, CNG보다 압력이 낮은 LNG 내압용기를 CNG 내압용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토록 하여, 설치 가능한 LNG 내압용기의 부피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
 - ▶ (개선목표)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(LNG) 내압용기 설치기준 마련
 - ▶ (기대효과) 내압용기의 부피 확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 증대
 - ※ (파급분야) LNG 상용차를 활용하는 물류업계, 상용차 제작사 등 관련 산업 활성화

[신기술 선박]

- PE(Polyethylene)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 마련
 - ▶ (규제현황) PE 소재를 활용한 선박건조 시 구조적 강도, 재질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선박건조가 허용되지 않음
 - ▶ (개선목표) 선박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PE 소재 사용 선박의 건조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PE 소재 선박활용 확대 및 산업 활성화
 - ※ (파급분야) 수상레저기구 등 소형·개인용 선박에 PE소재 활용 가능
- ⚠ 소형무인선박*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 완화
 - * 소형무인선박의 개념(크기, 톤수, 원격·자율운항 여부 등)은 현재 논의 중
 - ▶ (규제현황) 무인선박도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라 선박 운항 시에 선박직원(해기사 면허자) 승선이 의무화
 - ▶ (개선목표) 해상교통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무인선박 운항
 - ▶ (기대효과) 소형무인선박 기술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
 - ※ (파급분야) 자율운항선박 조선업, 운항 장비 등 다른 제조업까지 활용 확대
- ₿ 소형무인선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 마련
 - ▶ (규제현황) 소형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선박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
 - ▶ (개선목표) 소형무인선박 운용
 - ▶ (기대효과) 소형무인선박 보급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
 - ※ (파급분야) 자율운항선박 조선업, 운항 장비 등 다른 제조업까지 활용 확대
- 액화석유가스(LPG)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 마련*
 - * 규제특구(부산 해양모빌리티) 실증결과 및 IMO(국제해사기구) 논의를 참고하여 추진
 - ▶ (규제현황) LPG 선박에 대한 법과 기준이 없어 건조 검사 및 운항이 불가해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에 어려움 발생
 - ▶ (개선목표) LPG 선박 관련 법령 및 건조 기준 제정
 - ▶ (기대효과) 건조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촉진
 - ※ (파급분야) 여타 친환경 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확대

[드론·로봇]

- ⑤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,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・ 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
 - ▶ (규제현황) 유망 드론사업 상용화를 위한 실증비행 지원을 위해 "드론특별 자유화구역"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, 현재 33곳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중(지자체 확대 요구 중)
 - ▶ (개선목표)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구역 지속 확대
 - ▶ (기대효과) 드론산업의 상용화 개발기간 단축(약 5개월), 비용절약
- ☞ 무게·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출입 및 주행 허용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► (규제현황) 「공원녹지법」에 의해 공원 내 차도 외 장소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
 - ▶ (개선목표)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청소, 무인 배달 등 로봇을 통해 공원이용객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 제공,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 확보를 통한 로봇·인공지능 산업 발전
 - **※ (파급분야)** 자율주행로봇을 도심 전반으로 활용 확대
- ※ 안전성 기준(속도, 크기 등)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(배달로봇 등)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(人道) 주행 허용(7.28일 경제 규제혁신 TF)

[ICT·소프트웨어]

-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*하고,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사업구역 내에서 근무교대 장소를 사전에 확정할 필요
 - ▶ (규제현황) ①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근무교대 → 기사의 출퇴근 불편 가중 및 차고지까지 이동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, ②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시 기사의 음주여부 확인 필요 → 원격지 근무교대 불가
 - ▶ (개선목표)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 및 음주측정 허용
 - ▶ (기대효과)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시간 절약 및 법인택시 기사 채용 여건 개선
- PC온라인·비디오·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, 다른 플랫폼 확장 시 등급분류 효력 유지*(재심의 생략)
 - * 청소년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
 - ▶ (규제현황) PC온라인 플랫폼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비디오·모바일 버전으로 확장할 경우 재심의 없이 등급이 정해지나, 반대의 경우에는 별도 등급 재심의가 필요하여 게임 개발사에 부담
 - ▶ (개선목표) 하나의 플랫폼(PC온라인, 비디오, 모바일)에서 등급분류 승인을 받으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 시 등급 재심의 생략
 - ▶ (기대효과) 복잡한 등급분류 재심의 절차 개선 및 관련 행정비용 완화를 통한 게임산업 활성화
-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 등 완화*
 - * 지정요건 완화(매출액→매출액 또는 자본금) 및 지정기간 확대(3년→5년) 등
 - ► (규제현황)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게임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출액, 전담인력 등 요건충족 필요
 - ▶ (개선목표)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확대 및 책임있는 등급분류제도 운영
 - ▶ (기대효과) 사업자 간 경쟁 유도 및 게임업체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게임 산업 활성화

③ (기타 분야) 환경, 보건의료, 입지 분야 규제완화 추진

[환경]

- ① 자동차연료 **첨가제 재검사 시** 연료 제조기준,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
 - ▶ (규제현황) 자동차연료 첨가제·촉매제 검사 유효기간(3년) 종료 후에도 계속 하여 제조하려는 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, 검사항목 중 배출 가스 검사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과도
 - ▶ (개선목표) 첨가제 재검사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 및 이행력 제고
 - ▶ (기대효과) 검사 소요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재검사 가능
 - ※ (파급분야) 자동차연료 첨가제 산업 지원
- ② 통합관리사업장 폐수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공공처리시설의 저감효과가 인정되는 오염물질 확대(23개→36개), 실측조사결과를 반영한 저감계수 활용*
 - * 현재는 2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영국 화학물질조사프로그램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제거효율 적용 중
 - ▶ (규제현황)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 허가배출기준 산정시 일부 오염물질(23개)은 공공처리시설의 저감효율까지 감안하여 기준 산정 중이며, 저감 효율 계산시 활용되는 저감계수는 해외기준(영국) 사용 중
 - ▶ (개선목표)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 허가배출기준 산정시 공공처리시설의 실질적인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
 - ▶ (기대효과) 저감효과가 인정되는 오염물질이 확대되어 기업의 불필요한 저감시설 설치 방지 및 불합리한 허가배출기준 설정 예방
 - **※ (파급분야)** 현재 화학업종에서 반도체, 발전 등 확대 예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폐수 배출 규제 합리화
- ❸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시 사후신고 절차* 신설
 - * 30일 이내 변경신고시 과태료:행정처분 적용 제외
 - ▶ (규제현황)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시 사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나, 원료나 공정 등의 변경 없이 원인불명의 새로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
 - ▶ (개선목표) 수질오염물질 신고제도 합리화
 - ▶ (기대효과)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업장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
 - **※ (파급분야)** 수질오염 관리제도 개선

- 4 벤조a피렌(대기오염물질)의 오염시험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
 - (규제현황) 대기오염물질 중 벤조a피렌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결과 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염물질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되더라도 "불검출"이 아닌 미량의 농도값을 표시 → 인허가 과정 등에서 오해 소지
 - ▶ (개선목표) 대기오염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
 - ▶ (기대효과) 결과 표시기준을 확립하여 일선행정 및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※ (파급분야)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분야 및 측정분야에 적용

[보건·의료]

- ⑤ 의료법령*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화(※민간위원 발굴과제)
 - * 의료법 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 - ▶ (규제현황)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,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
 - ▶ (개선목표)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향상
 - ▶ (기대효과)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의료기관-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→ 의료 접근성 향상
-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간소화*
 - * (현행) 본인인증: 회원가입, 공동인증서, 휴대폰인증 서류제출: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 직접제출 (개선) 본인인증: 간편인증서비스(카카오, 네이버, 금융사, 통신사 등) 추가 서류제출: 주민등록,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증서류 제출 생략
 - ▶ (규제현황)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요청시 진료비 확인 신청서,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제출 외에도 본인인증 및 가족 신청시 환자가 주민등록정보, 보험자격확인 등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 해야 함
 - ▶ (개선목표)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
 - ▶ (기대효과) 소비자 권익보호 및 백내장 등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축소를 통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

[입지]

- 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시 재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"경미한 변경"의 범위 확대*
 - * ^①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'연면적 10%미만 변경' 판단시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이 아닌 전체 건축물 합산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 ②경계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
 - ▶ (규제현황)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·폐지 시 '경미한 사항'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데, '경미한 사항'의 범위가 협소하여, 빈번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시행 지연
 - ▶ (개선목표) '경미한 사항'의 범위 확대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 간소화
 - ▶ (기대효과)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 국민불편 해소
 - ※ (파급분야) 시장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 생활SOC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
- **3** 준산업단지 개발시 「산단절차간소화법」을 적용하여 절차 간소화
 - * (현행) 준산업단지정비계획 수립 \rightarrow 준산업단지 지정 \rightarrow <u>실시계획 승인</u> \rightarrow 착공 (개선) 준산업단지정비계획(실시계획 포함) 수립 \rightarrow 준산업단지 지정 \rightarrow 착공
 - ▶ (규제현황) 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시, 도시계획·산업입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이 필요하나, 각 심의의 개별 진행으로 업무상 중복, 행정절차 지연 등 준산업단지 제도 활성화 한계
 - ▶ (개선목표) 준산업단지 지정·추진 절차 간소화 및 제도 활성화
 - ▶ (기대효과) 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준산업단지 계획수립 기간 단축
 - ※ (파급분야) 대도시 주변·외곽의 난개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·개발에 확산 적용
- ③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최대 20년(최초 10년, 연장 10년)에서 초과하여 연장
 - ▶ (규제현황)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국·공유재산 임차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나,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풍력발전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
 - ▶ (개선목표) 재해안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
 - ▶ (**기대효과**) 풍력발전 시설투자 증가
 - **※ (파급분야)**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

Ⅳ. 향후 계획

① 규제 소관 부처 책임下 규제혁신과제 36개 차질없이 이행

-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금번 36개 신규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
- TF 內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·완료여부를 지속 점검
 - 과제이행이 지연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점검하고 TF 논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추진

② 경제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

- 경제 규제혁신 TF TF 內 7개 작업반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 지속 발굴
- 협단체, 연구기관 등 **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를** 발굴하고, **현장애로투자 프로젝트** 지원을 위한 기업 면담·간담회 지속
 - 특히, 기업 면담·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를
 추가 발굴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
- 검토대상 과제로 접수되었으나, 아직 **개선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과제**에 대해서도 **신속히 논의를 추진**하여 결론을 도출

③ 민간주도 규제개선의 가시적 성과

- 금번 민간위원 선정·발굴과제 중 **미개선 과제**에 대해 향후 **규제심판**(국조실), **경제 규제혁신 TF** 논의 등을 통해 개선 추진
- ○「TF 민간위원들의 우선개선 필요과제 선정 소관 부처 책임관 지정을 통한 집중 검토」프로세스 지속 운영

④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

-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, 이해관계가 복잡한 핵심과제는 폭넓은 의견수럼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상생방안 모색
- ◈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,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하여 개선 추진 ☞ 10월 중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(잠정)

참고 1

과제별 추진 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
① 현장애로 (8건)

1-1	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(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,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,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개정)	′22.4분기	국토부
1-2	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화물 규격 확대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)	'22.4분기	국토부
1-3	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시 심의 규제 생략 (건축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)	'23.1분기	국토부
1-4	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)	'23.1분기	국토부
1-5	공사이행기간 단축시 의무 감액정산규정 삭제 (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)	′22.4분기	기재부
1-6	기업의 공장 신·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 (신·증축 허용량 배정)	′23.1분기	기재부
1-7	회전기계 안전덮개 안전조치 가이드 마련 (가이드 제작·배포, 기술지침 안내)	′22.4분기	고용부
1-8	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완화 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)	'23.1분기	과기부

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

② **신산업**(19건)

2-1	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(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)	'22.4분기	산업부
2-2	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 (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)	′23.1분기	산업부
2-3	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 개선 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	′23.1분기	소방청
2-4	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·판매 허용 (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)	′23.1분기	산업부
2-5	주유소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연료전지 추가 (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)	'23.1분기	소방청
2-6	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 실내물류운반기계 포함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)	′23.1분기	산업부
2-7	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 범위 확대 (수소자동차 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)	′23.1분기	산업부
2-8	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(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제출)	′22.4분기	산업부
2-9	주유소에 회수-액화 통합시설 설치 허용 (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 안내)	′22.3분기	환경부
2-10	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(자동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)	′22.4분기	국토부
2-11	PE 소재 선박 검사기준 마련 (PE 선박 검사기준 마련)	'23.4분기	해수부
2-12	소형무인선박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 완화 (소형무인선박 승무기준 특례 도입)	′23.1분기	해수부
2-13	소형무인선박 운용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 마련 (소형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 운용기준 마련)	'23.4분기	해수부
2-14	액화석유가스(LPG)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 마련 (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마련)	'23.1분기	해수부
2-15	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 (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추가 지정)	′23.1분기	국토부
2-16	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출입 및 주행 허용 (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)	′23.1분기	국토부
2-17	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 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)	′23.1분기	국토부
2-18	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다른 플랫폼 확장시 효력 유지 (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개정)	′22.4분기	문체부
2-19	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 등 완화 (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)	′22.4분기	문체부

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

③ **여타 분야**(9건)

3-1	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생략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)	'22.4분기	환경부
3-2	통합관리사업장 폐수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(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)	'22.4분기	환경부
3-3	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(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)	'22.4분기	환경부
3-4	벤조a피렌의 오염시험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(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)	'22.4분기	환경부
3-5	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(의료법령 유권해석)	'22.4분기	복지부
3-6	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(심평원 홈페이지·앱 개선,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)	'22.3분기	복지부
3-7	실시계획상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(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)	'22.4분기	국토부
3-8	준산업단지 개발시 절차 간소화 (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 제출)	'23.2분기	국토부
3-9	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)	'23.2분기	산림청

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【1. 현장애로】			
1-1. 택배용 화물차	국토교통부	박진홍 과장	김병채 서기관
최대적재량 확대	물류산업과	044-201-4016	044-201-4017
1-2.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	국토교통부	박진홍 과장	이경섭 사무관
소화물규격 확대	물류산업과	044-201-4016	044-201-4021
1-3. 3층 이상 가설건축물	국토교통부	김연희 과장	이지형 사무관
축조시 심의 규제 생략	건축안전과	044-201-4987	044-201-4985
1-4. 건설업체 시공능력	국토교통부	김근오 과장	박정란 서기관
평가제도 개선	건설정책과	044-201-3504	044-201-3512
1-5. 공사이행기간 단축시	기획재정부	김장훈 과장	김남희 서기관
의무 감액정산규정 삭제	총사업비관리과	044-215-7210	044-215-7411
1-6. 기업의 공장 신증축	기획재정부	정원 과장	정민종 사무관
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	지역경제정책과	044-215-4570	044-215-4573
1-7. 회전기계 안전덮개	고용노동부	김진숙 과장	신정욱 사무관
안전조치 가이드 마련	산업안전기준과	044-202-8850	044-202-8853
1-8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	설재진 과장	박참이 주무관
겸직제한 완화	사이버침해대응과	044-202-6460	044-202-6464
[2. 신산업]			
2-1.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	산업통상자원부	문병철 과장	신민영 주무관
공유 서비스 허용	신산업분산에너지과	044-203-3920	044-203-3922
2-2. 전기차 무선충전기를	산업통상자원부	임완빈 과장	남경민 사무관
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	계량측정제도과	043-870-5510	043-870-5511
2-3.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	소방청	이동원 소방정	김수희 소방령
기준 개선	위험물안전과	044-205-7490	044-205-7484
2-4.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	산업통상자원부	강경택 과장	정지웅 주무관
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 허용	전력시장과	044-203-3910	044-203-3916
2-5. 주유소 내 설치가능	소방청	이동원 소방정	김수희 소방령
시설에 연료전지 추가	위험물안전과	044-205-7490	044-205-7484
2-6.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	산업통상자원부	황윤길 과장	박경민 사무관
실내물류운반기계 포함	에너지안전과	044-203-3980	044-203-3985
2-7.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	산업통상자원부	황윤길 과장	박경민 사무관
운용자 범위 확대	에너지안전과	044-203-3980	044-203-3985
2-8.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	산업통상자원부	황윤길 과장	박경민 사무관
	에너지안전과	044-203-3980	044-203-3985
2-9. 주유소 회수-액화	환경부	장성현 과장	서수영 사무관
통합시설 설치 허용	대기관리과	044-201-6900	044-201-6914
2-10. 자동차 액화천연가스	국토교통부	심지영 과장	김혁 사무관
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	자동차정책과	044-201-3835	044-201-3850
2-11. PE 소재 선박 검사기준	해양수산부	이창용 과장	황정웅 사무관
마련	해사산업기술과	044-200-5830	044-200-5831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2-12. 소형무인선박의 선박	해양수산부	김석훈 과장	윤현석 사무관
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 완화	선원정책과	044-200-5740	044-200-5741
2-13. 소형무인선박의 운용 관련	해양수산부	이창용 과장	황정웅 사무관
구조 및 설비기준 마련	해사산업기술과	044-200-5830	044-200-5831
2-14. 액화석유가스 선박에 대한	해양수산부	이창용 과장	조경주 사무관
건조기준 마련	해사산업기술과	044-200-5830	044-200-5836
2-15. 드론특별자유화구역	국토교통부	김동익 과장	박정권 사무관
지정 확대	첨단항공과	044-201-4307	044-201-4226
2-16. 자율주행 로봇 공원 내	국토교통부	박연진 과장	이영주 사무관
출입 및 주행 허용	녹색도시과	044-201-3742	044-201-3749
2-17.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	국토교통부	_	성경림 사무관
밖 근무교대 허용	모빌리티정책과		044-201-3813
2-18. 등급분류 받은 게임이 다른	문화체육관광부	정윤재 과장	도현우 사무관
플랫폼 확장시 효력 유지	게임콘텐츠산업과	044-203-2441	044-203-2442
2-19.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	문화체육관광부	정윤재 과장	도현우 사무관
사업자 지정요건 등 완화	게임콘텐츠산업과	044-203-2441	044-203-2442
[3. 기타 분야]			
3-1.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	환경부	황인목 과장	김은희 사무관
배출가스 검사 생략	교통환경과	044-201-6920	044-201-6921
3-2. 통합관리사업장 폐수 허가배출	환경부	이장원 과장	변상윤 사무관
기준 설정 합리화	통합허가제도과	044-201-6715	044-201-6717
3-3.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	환경부	박병언 과장	임옥상 사무관
사후신고 절차 신설	수질관리과	044-201-7060	044-201-7071
3-4. 벤조a피렌의 오염시험	환경부	장성현 과장	임충묵 서기관
	대기관리과	044-201-6900	044-201-6905
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	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	-	공부주 연구관 032-560-7333
3-5.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	보건복지부	강준 과장	강태수 사무관
진료비 정보 게재	의료보장관리과	044-202-2680	044-202-2684
3-6.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	보건복지부	이상희 과장	이현희 사무관
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	보험평가과	044-202-2770	044-202-2780
3-7. 실시계획상 경미한 변경	국토교통부	윤의식 과장	이재훈 사무관
범위 확대	도시정책과	044-201-3706	044-201-4972
3-8. 준산업단지 개발 절차	국토교통부	윤영중 과장	심자광 사무관
간소화	산업입지정책과	044-201-3674	044-201-3739
3-9.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	산림청	도재영 과장	장병철 사무관
허가기간 연장	산지정책과	02-770-7165	042-481-4148